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8 | 2025.09.01 (2025.08.25~2025.08.3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10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30→45조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는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형법」 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3인)**」 ,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 · 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2인)**」 ,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 화재 · 폭발 · 매몰 · 무너짐 · 질식 · 중독 · 화학 물질 노출 · 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 · 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 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 · 송기현의원 등 24인)**」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1.10:00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법사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환노위>, <국토위> 및 <예결위> 등에서 결산과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무위>와 <교육위>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기획재정부)..... 7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하고 수권자본금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통과(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1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1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2인) 16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4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의원 등 12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19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2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	24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24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의원 등 14인) ·····	2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의원 등 10인) ·····	25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의원 등 13인) ·····	25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의의원 등 21인) ·····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27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등 12인) ·····	2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	27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	2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2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	30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현승의원 · 송기현의원 등 24인) ·····	31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1인) ·····	31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	3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32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	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	33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6인) ·····	3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	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후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기업 셈법 복잡해진다 –
- [조세] 관세청,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 관련 제도의 비교
- [소송]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선고형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5-08-20

기획재정부는 지난 7.31.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힘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임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월 단위) (국기법 § 47의4· § 47의5)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시기 ○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 개정규정 적용 ○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 '26.7.1. 이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 적용시기 변경 ○ (좌 동) ○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 116)

당초안	수 정 안
<신 설>	☐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 100의18)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가산세 항목 추가 ○ (좌 동)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 76의19, § 76의21)

당 초 안	수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 (좌 동)

<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금융위원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하고 수권자본금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 AI,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년간)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민간자금 50조원 이상과 함께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 조성(‘국민성장펀드’)
- 기존 30조원이었던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규모는 11년만에 45조원으로 상향하여 산업은행의 지원여력을 확대

2025-08-27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30→45조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함.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함

특히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존의 ‘재정+정책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 ·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투자기간 동안 적극적인 투자과정에서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임.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할 예정임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음.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초기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이와 함께 산업계 및 금융권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취지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지원, 지역개발 및 시장안정 등 산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은 30조원(`14.12월 개정)에서 11년만에 4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25-08-26 시행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한편,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1-01 시행 예정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25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예산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 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7 시행 예정
-------	-----------------------	------------------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토교통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2026-02-27 시행 예정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26 시행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있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6-02-27 시행 예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2025.09.2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종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8, 팩스: 044-204-8969\)](tel:044-205-3838)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2025.09.22.
-------	----------------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간 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전화: 044-205-3811, 팩스: 044-204-8968\)](tel:044-205-38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2025.09.22.
-------	------------------	-----------------------------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차등감면 도입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고,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tel:044-205-3853) (전화: 044-205-3853, 팩스: 044-204-8971)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8.28.
~2025.10.10.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 (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의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②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 (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tel:044-202-3304) (전화: 044-202-3304, 팩스: 044-202-396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8.29.
~2025.10.10.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②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 감시인 ·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전화: 044-202-8875, 팩스: 044-202-8093\)](tel:044-202-887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5-08-28 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 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8-29 발의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후문제가 기업의 사업 수행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 평가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그와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현행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적 결의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의 도입이 곤란함

이에 상장회사에 관하여 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를 두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주주제안의 형태로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16 신설)

정무위원회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08-26 발의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8-29 발의

「상법」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아닌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인수·합병 방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의 방식과 달리 주식양수도의 경우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5-08-25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5-08-25 발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의원 등 12인)

2025-08-26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2025-08-27 발의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24조제1항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의원 등 62인)

2025-08-27 발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와 사적서비스 영역 사이에는 소외된 경제영역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소외된 경제영역을 공공영역이 복지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정부 재원이 필요하고,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비스비용이 높아져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음

이 부분을 채워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시장경제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이나 그 동안 각 영역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5-08-28 발의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임. 나아가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세율이 60%에 이릅니다

세계 최고(最高) 수준의 현행 상속세제는 세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첫 번째로 세대 간 자본이동에 따른 부의 재분배라는 본래의 과세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대주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승계가 임박할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유인이 저하되고, 오히려 기업가치 유지 또는 하락을 선호하는 경향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 특히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무관한 과세인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질 경우 대주주의 세금회피 유인을 더욱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전반을 제약하여 한국 자본시장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공익재단 기부자산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미비 역시 막대한 상속자산의 사회적 재분배를 주저하게 만들어 기업가가 사회복지, 교육, 학술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자산이 쌓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앞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내부 견제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에 부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유지하려면 기업 또는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상속세제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개정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배경임

이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26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63조제3항 삭제)**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5-08-28 발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대주주는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수주주의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됨. 결과적으로 현행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3인)

2025-08-25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부동산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조성 완료’라고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됨

그러나 통상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조성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78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08-26 발의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2025-08-26 발의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단체 등에 대해 유튜브 채널이나 1인미디어 등 실시간·비실시간 화상·영상매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켜 개인 및 사회 조직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영상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08-2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48조의7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08-29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2025-08-25 발의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 (안 제17조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2025-08-25 발의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3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5-08-26 발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거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제8항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2025-08-27 발의

현재 농업·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 및 농가소득 정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또한 시급한 상황인 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한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농업인의 참여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5-08-25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의원 등 13인)**

2025-08-26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수출·투자·고용을 견인하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설비와 전문인력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특히, 산업 내 특정 사업 부문은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제조원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신증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특성 및 국내 사업 환경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 지역 산업단지와 지역경제 전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 역시 최근 석유화학 구조개편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감축에 치중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며, 금융지원 또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선제적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차입금 만기 연장,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대출 대체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의원 등 21인)

2025-08-26 발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전 세계 73개국 153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재외동포 경제인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로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재외동포 무역인 및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 6단체’가 국내 다양한 유형의 기업과 경제인을 대표하며 활발히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지원 부족과 해외 활동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주요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어 재외동포 경제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국내 경제 7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네트워크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5-08-27 발의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2025-08-27 발의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자산임. 특히 철강산업은 높은 탄소 집약도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분야임과 동시에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임

우리 철강산업은 그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의 철강 관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개발과 청정수소·무탄소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5-08-28 발의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2025-08-26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은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높여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제6항 및 제29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8-26 발의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배출권 과잉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년 2025년) 동안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불과하며, 그 결과 최대 1억 4천만톤의 배출권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하시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상할당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08-26 발의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배제 및 일부 규정의 예외적 적용’ 형태의 입법구조는 노동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ILO 협약 등 국제규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의 변경 없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원칙적 적용 및 일부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예외적 제외’의 형태로 입법구조를 전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을 지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 없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5-08-27 발의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8-27 발의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56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5-08-28 발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지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이헌승의원 · 송기헌의원 등 24인)

2025-08-25 발의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초고령사회의 최대 분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노인 세대와 달리 건강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활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서 의료·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2025-08-26 발의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025-08-26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과 관련 사업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5-08-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둌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2025-08-27 발의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톡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025-08-27 발의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함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음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6인)

2025-08-28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2025-08-29 발의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35조제2항제3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1(월) 14:00	-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9/2(화) 14: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4(목) 10:00	- 고유법 심사
	법안심사1소위	9/5(금) 10:00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정무위	전체회의	9/2(화) 10:00	-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억원) 인사청문회
		9/5(금) 10:00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주병기) 인사청문회
교육위	전체회의	9/2(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9/2(화) 11:00	-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방위	전체회의	9/2(화) 14:00	- 2024회계연도 결산 의결, 법률안 등 상정
행안위	전체회의	9/1(월) 15:00	-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환노위	전체회의	9/1(월) 15:00	-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9/1(월) 15: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9/2(화) 14:00	- 법안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9/1(월) 10:00	-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월) 10:00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주철현·권향엽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1(월) 14:00	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이병진·문금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화) 14:00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송재봉·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화) 14:00	국민 삶의 질 회복 국내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	송기현·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화) 14:00	제3차 시니어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간담회	민병덕·안도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3(수) 14:00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	김종만·이성권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4(목) 09:30	4차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	고동진·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5(금) 10:00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2	신장식·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9/1(월)	「Data+」 제17호(2025-17호) 발간	국회도서관	
	9/3(수)	「금주의 서평」 제744호(2025-35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25(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6호(2025-16호)	국회도서관	
	8/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6호(통권 제279호)		
	8/27(수)	「Data&Law」 제34호(2025-9호)		
	8/27(수)	「금주의 서평」 제743호(2025-3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25(월)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후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기업 셈법 복잡해진다 -
8/25(월)	조세	관세청,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시행
8/26(화)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 관련 제도의 비교
8/26(화)	소송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선고형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